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9. 10. 17(목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주택건설 공급과	담당자	·과장 이유리 사무관 정재형 ·☎ (044) 201-3376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·회피제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□ 공동주택의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을 법원소송을 대체해 신속·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'09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(이하 하심위)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.

○ 위원회는 하자여부 판정 등에 대한 전문성 측면에서 학계(교수), 건설전문가(건축사 등), 법조계(변호사)등 총 5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 중에 있으며, 공사상 잘못 등 하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의 전문가 참여는 불가피합니다.

※ 위원(50명) 중 건설사 소속위원은 4·5기 각각 3인('15.6.19~'19.12.31)

□ 다만,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해당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위원 제척·회피를 할 수 있도록 하심위 위원의 제척·회피제도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48조)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□ '15년 6월 이후 LH가 당사자인 하자분쟁 조정사건(62건) 분석 결과, 그 간 LH 도급공사를 수주한 이력이 있는 회사의 임원이었던 자(2인)가 위원으로 참석한 사건이 총 8건이나,

○ 해당 위원이 소속된 건설사와 하자분쟁조정 사건의 건설사가 달라 해당사건과 관련이 없으며, 자사의 하자분쟁 사건에 참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○ 특히, 자사가 직접 시공한 사건에 참여한 것으로 보도된 1건도 분쟁조정 심사가 아닌 단순히 사건의 처리기간을 연장 의결한 사항입니다.

○ 아울러, 하심위 사무국에서는 위원회 상정된 사건의 시공사 관계자가 위원으로 배정되지 않도록(제척) 위원회 상정 前 사전 스크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□ 앞으로도, 하심위가 더욱 효과적으로 소비자 권리구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정기능 도입하는 등 하자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※ 어느 한 당사자가 조정안을 반대 시 결정의 효력이 없는 현행의 조정제도 보다 재정 제도는 재정결정 시점부터 일정기간 내(예: 60일) 소송을 제기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

< 관련 보도내용 (서울신문, 10.17) >

◆ 건설사가 아파트 하자분쟁 셀프심사 논란

- LH 도급계약에 참여했던 건설사 임원이 LH 하자분쟁관련 조정위원으로 참석
- 일부위원은 자사가 직접 시공한 사건의 기간연장을 심의·의결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정재형 사무관(☎ 044-201-337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